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12. 6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 / 항공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도곤, 사무관 손상희, 주무관 김관호 • ☎ (044) 201-4231, 4230
보 도 일 시	2019년 12월 9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9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

-9일부터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-교통약자 탑승교·승강설비 우선배정, 안전정보 제공…이동권 강화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'**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**', '**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**'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**항공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**」 **일부 개정안**을 **입법예고**하였다.

○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「항공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,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**교통약자의 요청**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**정보**를 **제공**하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승·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**휠체어**를 이용하는 **교통약자**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**탑승교** 또는 **휠체어 승강설비**를 **우선 배정**할 수 있도록 정하고,

○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**우선좌석**을 **운용**하며, **자막, 점자, 그림** 등을 이용한 기내 **안전정보**를 교통

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.

○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**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**에 대해 **면허**를 **취소**하도록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**개정안에 대해 의견**이 있는 경우 **2020년 1월 18일**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
(전화: 044-201-4231, 4230, 팩스 044-201-5625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손상희 사무관(☎ 044-201-37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